**AZMEDIA 업무 계약서**

주식회사 에이지미디어그룹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와 염만호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은 주식회사 에이지미디어그룹의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.

**제1조 계약의 목적 및 업무의 정의**

본 계약은 “갑”이 필요로 하는 3D 디자인 업무(이하 ‘본 업무’)를 “을”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함에 있어, “갑”과 “을” 사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관계법령의 준수**

양 당사자는 대등한 관계에서 본 계약을 합의하고 체결하며,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이행한다.

**제3조 신의성실의 원칙**

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상호간에 공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한다.

**제4조 계약기간**

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21. 9. 6 부터 2021. 10. 22 까지로 한다. 계약 만료일 30일전까지 어느 일방의 계약해지통보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．

**제5조 갑의 의무**

* “갑”은 “을”이 제1조의 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“을”에게 제공하며 “을”은 “갑”이 제공한 정보 및 자료를 이 계약의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하지 못한다.
* 본 업무를 위해 “을”에게 공유한 계정접근정보는 작업 종료 후 “갑”에서 접근권한삭제 및 패스워드 변경을 진행한다.
* 갑은 을이 산출물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명확히 업무를 지시한다.

**제6조 을의 의무**

* "을”은 “갑”이 만족할 수 있도록 기한 내에 본 업무를 완료한다.
* 제5조 제2항을 “갑”이 수행 할 수 있도록 본 업무 완료 후 내용 공지 및 패스워드 변경 외에 접근권한삭제 필요 시 가이드를 제공한다. “을”이 “갑”에게 본 업무 종료 후 공지 및 가이드 제공의 책임을 다한 경우, 해당 사항과 관련한 추후 문제는 “을”에게 책임이 없다.
* 을은 최대 2회 까지 최종 산출물의 수정 및 보완을 진행한다.

**제7조 대금지급**

“갑”은 “을”에게 업무 진행 비용 4,000,000원을 “을”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.

**제8조 양도금지**

* 양 당사자는 상호간의 서면 승인 없이 본 계약의 내용 및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, 담보제공, 기타 여하한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.
* 전 항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가 이전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, 위반 당사자는 그 배상책임을 진다

**제9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**

* 본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에 규정된 자신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, 상대방은 서면 또는 구두 유선으로 그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그로부터 7일 이내에 귀책 당사자의 시정 또는 개선조치가 없는 경우에 상대방은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* 본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상대방은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* 당사자 일방이 (가)압류, (가)처분, 체납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을 받거나 화의, 회사정리 절차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거나 당한 경우
* 관계 기관에 의하여 영업정지, 영업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
* 당사자 일방이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지급 정지된 경우
* “갑”이 “을”에게 제 7조의 결제 금액 지급을 작업 완료 후 1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
* 양 당사 중 일방에게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,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, 즉시 상대방은 본 계약의 해지나 해제를 청구할 수 있고, 이미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정산하여야 한다.
* 거래은행으로부터 당좌 거래정지 등 그에 상응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
* 조세체납으로 압류 처분 받았을 경우

**제10조 손해배상**

* 양 당사자는 일방은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상 또는 개별적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* 본 계약상의 해제 등은 양 당사자의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**제11조 비밀유지의무**

* “갑”과 “을”은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 본 계약의 종료나 해제 또는 해지 후, 본 계약의 계약 조건 및 본 계약의 이행 과정 전반 사항 및 그로 인해 알게 된 상대방의 기술정보, 영업비밀 및 기타 관련 자료 등을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된다.
* 당사자 일방이 전1항의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“갑” 또는 “을”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, 귀책 당사자는 이에 대해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**제12조 분쟁해결 및 합의관할**

*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호협의로 원만히 해결하도록 한다.
* 전 항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관할법원으로 한다.

상기 내용의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“갑”과 “을”이 기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.

2021년 9월 6일

**(갑) 주식회사 에이지미디어그룹**

**주 소 : 서울 마포구 토정로 24-12, 3층**

**대표이사 : 김 도 형 (인)**

**(을) 염만호**

**주 소 : 서울 관악구 행운5길 20**

**성 함 : 염 만 호 (인)**